

	Chap2. 거절이유 12-1. 권리범위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28104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제목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관객들의 응원봉 조명을 제어하는 피고 실시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시사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 및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판결이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5123 판결 등 참조).	

(1) 본 판례의 의의 및 취지

- 본 판례는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관객들의 응원봉 조명을 제어하는 피고 실시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발명인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기준 및 청구범위 해석 기준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 즉,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다만 청구범위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본 판례는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 발명에 관한 설명 또는 도면 참작의 한계 및 구성요소 흠결 시 권리범위 불속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2) 사안개요

- 원고는 주식회사 ○○○이고,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에 관한 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특허심판원 2020. 9. 22. 자 2019소50 결정 확정에 의해 정정되었다.
- 정정된 청구범위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 피고는 주식회사 △△△이다.
- 피고는 아티스트들의 공식 응원봉을 제작·판매하고, 그 응원봉과 관객들의 스마트폰을 연동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제공하였다.
- 피고는 이를 통해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관객들의 응원봉 조명을 제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위 서비스를 **피고 실시 서비스**라 한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실시 서비스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침해금지, 침해제품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미리 설정된 그룹’**에 대한 기술적인 의미 및 피고 실시 서비스가 이를 포함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3) 법리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기준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청구범위 해석 기준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 사례형 답안상 핵심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

3) 설명·도면 참작의 위치

-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은 청구범위 문언의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참작된다.
- 그러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4) 특허법원 / 원심법원 판단

- 원심은 특허법원 2024. 2. 1. 선고 2021나2087 판결이다.
- 판결문상 원심의 구체적 이유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라고 기재되어 있어, 대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범위에서 정리한다.
-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미리 설정된 그룹’에 대한 기술적인 의미를 해석하였다.
- 원심은 피고 실시 서비스는 이러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4에 기재된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증거로 인정되는 사항을 보충하였다.
- 원심은 이를 통해 피고 실시 서비스의 구체적 행위 내용을 명확히 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피고 실시 서비스를 대비하였다.
- 원심은 피고 실시 서비스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은 결과적으로 피고 실시 서비스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대법원 판단

1) 제1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대법원은 먼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및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미리 설정된 그룹’에 대한 기술적인 의미를 해석하였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 실시 서비스는 이러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 그 결과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제2, 3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4에 기재된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증거로 인정되는 사항을 보충하였다.
- 원심은 이를 통해 피고 실시 서비스의 구체적 행위 내용을 명확히 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피고 실시 서비스를 대비하였다.
- 원심은 피고 실시 서비스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 실시 서비스의 특정 등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최종 판단

- 대법원은 원심의 청구범위 해석 및 피고 실시 서비스 대비 판단을 수긍하였다.
- 대법원은 피고 실시 서비스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미리 설정된 그룹’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피고 실시 서비스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원심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6) 결론

-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은 유지되었다.
- 최종적으로 피고 실시 서비스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특허권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7) 한줄 키워드 요약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청구범위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되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며, 피고 실시 서비스가 ‘미리 설정된 그룹’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